



서울중앙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16인2 인신보호
 구제청구자 별지 1 기재와 같음
 변 호 인 별지 2 기재와 같음
 피 수 용 자 별지 3 기재와 같음
 수 용 자 국가정보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상현, 용진혁]

등본입니다.
 20년 1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 이재연

주 문

이 사건 구제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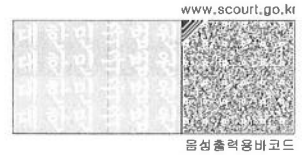
1. 이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수용자들은 북한 주민으로서 중국에 있는 류경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4. 7. 국내로 입국하였다.

나. 피수용자들의 보호신청에 따라 피수용자들은 신변안전 조치와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체류하게 되었고, 국가정보원장이 2016. 6. 3. 보호결정을 한 이후에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국내 정착을 위한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





등을 받았다.

다. 구제청구자들은 자신들이 피수용자들의 부 또는 모라고 주장하면서 변호인을 통해 2016. 5. 24.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피수용자들의 수용을 해제해 줄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하였다.

라. 재판부는 2016. 5. 31. 및 2016. 6. 1. 구제청구자 측 변호인들에게, 구제청구자들과 피수용자들의 관계 및 구제청구자들의 변호인들에 대한 위임사실을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명령을 하였다. 이에 변호인들은 2016. 6. 10. ① 위임장 사본, ② 구제청구자들이 위임장을 들고 있는 사진, ③ 공민증, ④ 구제청구자들이 피수용자들과 함께 찍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마. 재판부는 구제청구의 적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16. 6. 21. 제1회 심문기일을 열었으나, 심문기일 진행 중 구제청구자 측 변호인들은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

바. 기피신청에 대하여 2016. 7. 22.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2016초기2145), 위 결정은 즉시항고기간이 도과함에 따라 2016. 8. 3. 확정되었다.

사. 재판부는 2016. 8. 10. 구제청구자 측 변호인들에게, 기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구제청구자들과 피수용자들의 관계 및 구제청구자들의 변호인들에 대한 위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보정명령을 하였다. 이에 변호인들은 2016. 8. 23. ① 위임장 원본, ② 구제청구자들이 위임장을 작성하는 과정이 담긴 동영상 CD, ③ 북한 적십자회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아. 한편, 피수용자들은 2016. 8. 8.부터 같은 달 11.까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순



www.scourt.go.kr

음성출력용바코드

차적으로 퇴소하여 각자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다.

2. 구제청구자격의 부존재

가. 피수용자의 직계혈족은 피수용자를 위하여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인신보호법 제3조), 구제청구자들은 자신들이 피수용자들의 부 또는 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구제청구를 하였다.

나. 구제청구자들은 서류에 의하여 구제청구자격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바(인신보호규칙 제2조), 구제청구자격이 없는 자가 인신보호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 서류 내지 이에 준하는 문서로서 직계혈족 관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구제청구자들이 제출한 공민증, 사진, 북한 적십자회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구제청구자들이 피수용자들의 부 또는 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공민증에는 성명, 주소, 배우자 관계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자녀관계와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사진 속 인물이 구제청구자 및 피수용자와 동일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함께 있는 사진만으로 부모·자식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3) 북한 적십자회는 인민들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단체에 불과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구제청구는 구제청구자가 아닌 자가 구제청구를 한 경우(인신보호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3. 구제청구이익의 소멸





가. 인신보호법에 의한 구제청구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해제되었다면, 피수용자 등 구제청구자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한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른 수용시설에 다시 수용되었거나 향후 같은 사유로 재수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제청구의 이익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27.자 2011인마2 결정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수용자들은 2016. 8. 8.부터 같은 달 11.까지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를 순차적으로 퇴소한 후 각자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고, 달리 피수용자들이 향후 같은 사유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체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의 수용의 해제를 구하는 이 사건 구제청구는 더 이상 구제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구제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9. 9.

판사 이영제

